

훈련서 2

난민지위의 인정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94-4 청암빌딩 3층

Tel 796-1351 Fax 749-1417

<http://www.unhcr.or.kr>

TRAINING MODULE, RLD 2

Mh.b.3



UNHCR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1999

TRAINING MODULE, RLD 2 (1989)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차 례

머리말	iii
책소개	iv

제1장 난민의 정의	1
소 개	3
난민인정 요청	5
기준	8
난민인정조항	8
사례연구 A	15
적용정지조항	19
적용배제조항	20
사례연구 B-E	23
연습문제	31

제2장 난민지위 인정절차	37
소 개	39
정부에 의한 인정	40
UNHCR에 의한 인정	44
사례연구 F-G	47
연습문제	51

사례연구 분석	55
해답	65
용어	69

<부 록>

부 록 1 난민지위 심사 양식	73
부 록 2 집행위원회 결의 8 (XXVIII)	81
부 록 3 집행위원회 결의 15 (XXX)	83
부 록 4 집행위원회 결의 28 (XXXIII)	87
부 록 5 집행위원회 결의 30 (XXXIV)	89
부 록 6 유럽 의회 수뇌위원회 권고 R (81) 16	91

머리말

이 교육서는 난민법무국이 교육업무과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것이다.

편집은 위스콘신대학 매디슨 캠퍼스에 있는 재난관리센타에서 맡았다. 편집업무는 주로 내용과 형식에 관련된 것이다.

책 소개

이 훈련서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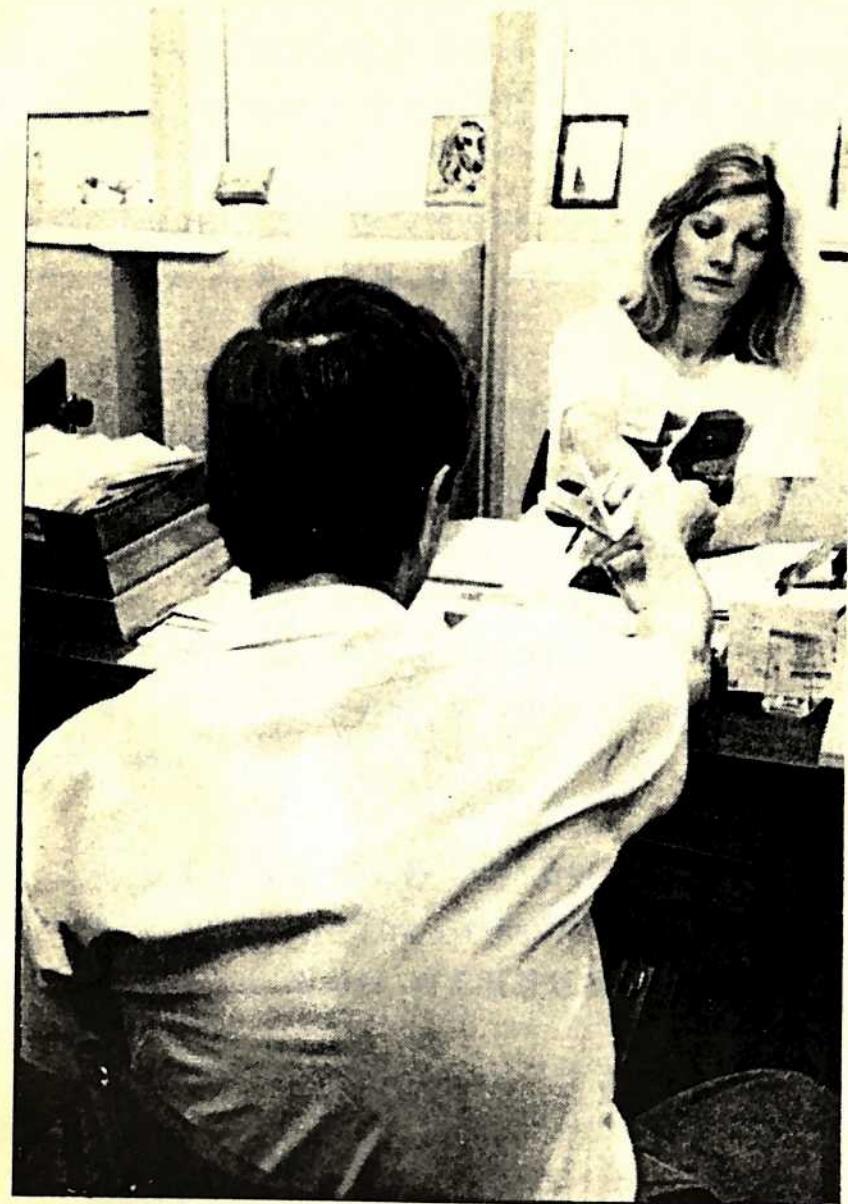
- 난민지위 인정에 적용되는 기준.
- 난민지위 신청이 이들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
-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를 구별하는 방법.
- 난민지위 심사절차의 중요한 특징 확인.
- 기존의 난민지위 인정절차를 개선하는 법.

이 책은 책소개, 두 개의 장 그리고 부록을 포함하고 있다. 제1장은 주로 난민지위신청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것이다. 제2장은 정부와 UNHCR에 의하여 적용되는 난민지위 인정절차에 관한 것이다. 부록은 이 교육서에 전과정에서 언급된 난민지위 심사 양식과 다양한 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 교육서는 난민지위 인정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UNHCR본부나 현지사무소 직원, 출입국 관리 공무원과 그외 관계 공무원, UNDP 직원, UNHCR과 협력하는 비정부기구 직원이 모든 대상이다.

별도로 발행된 강사용 지침서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이 책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각 장에서는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실제상황에 근거한 사례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사례연구에 대한 요약분석이 이 책의 뒷부분에 나와 있다. 요약분석에서는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의 관련 조항을 참고로 제시하고 있다. 각 장마다 간단한 테스트가 있다. 스스로 배운 것을 테스트할 수 있고, 학습한 것을 복습하고 평가할 수 있다. 책 마지막 부분에 해답이 있다.

제1장 난민의 정의



학습목표

- ▶ 난민지위를 결정하는 기준 분석.
- ▶ 적용정지조항과 적용배제조항이 적용되는 상황 확인.
- ▶ 이러한 지식을 난민지위 신청자 각각의 경우에 적용.

소 개

문구의 의미

“난민지위의 적격 결정”의 문구는 어려운 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난민지위 인정과정은 대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인간과 관련된다. 보다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X 혹은 Y씨가 난민인가 ?”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 X 혹은 Y씨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 된다.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

- 국적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
- 1951년 협약 또는 1967년 의정서에 명시된 (여행증명서 발급과 같은) 권리, 또는 이들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에서 일반국제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
-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지원 혹은 보호조치.
- 영구적 해결책(자발적인 본국귀환, 현지동화 또는 제3국에의 재정착)을 모색함에 있어서 지원.

이들 다양한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번째인, (비호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의 원칙이다. 이는 생사의 문제이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비호신청인이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그 결과는 극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참고 문서

* 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이하 의정서)
1951 Convention,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들 조약은 개인의 난민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다.

협약상 정의는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난민이 된 자, 달리 말해서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서 난민이 된 자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세계대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난민이주가 발생하였다. 1967년 의정서는 공식적으로

그러한 시간적 지리적 제한을 없애고, 난민협약규정을 보편적으로 적용되게 하였다.

현재 이들 조약 당사국은 138개국이며(1999년 10월 현재), 당사국은 조약의무를 지키면서 자국 영역 내에서 난민으로 인정한 자를 대우함에 있어 많은 국제적 의무를 받아들이고 있다.

*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이 편람은 1979년 발행되었고 난민지위 심사에 있어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편람은 널리 당사국의 정부공무원에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편람은 난민의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난민지위 인정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UNHCR 규정

UNHCR's Statute

1950년 국제연합 총회가 채택한 이 규정은 UNHCR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고, 고등판무관의 보호대상자를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이후에 발전되었으나 협약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 다음 OAU(아프리카 단결기구)협약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UNHCR 규정은 난민협약이나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특히 중요한 문서이다.

* 1969년 아프리카에서의 난민문제의 특별한 양상에 관한 OAU 협약

1969 OAU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이 지역조약은 협약보다 광범위하게 난민을 정의하고 있다. 그 차이는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자에게, 즉 "... 그의 출신국 또는 국적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외부침략, 점령, 외국의 지배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을 이유로, 그의 출신국이나 국적국 밖의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구하기 위하여, 강제로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야만 했던 모든 자에게" 난민자격을 확대하는데 있다.

이 교육서는 1951년 협약의 보편적인 정의에 한정되지만, 아프리카 상황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OAU협약상 정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난민인정 요청

1) 난민지위 인정 요청방법

난민들 자신도 항상 난민 지위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건 아니다. 자국을 탈출한 사람들에게, 이들이 자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이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난민지위 요청을 위한 다양한 채널이 있다.

- 정부에 직접 요청.
- UNHCR에 직접 요청.
- 유엔개발계획(UNDP)를 통해.
-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2) 난민자격 결정자

정부

협약상 난민 (Convention refugees). 국가가 협약이나 의정서의 당사국인 경우,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국내차원에서 난민지위에 관한 다양한 절차가 있다. UNHCR은 통상 이 절차에 관여한다. 난민의 입장에서 보면 협약상 난민지위가 가장 유리하다. 이에 의하여 난민은 강제송환으로부터 보장될 뿐 아니라, 협약과 의정서에 포함된 경제적 및 사회적 제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이들 권한은 난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인도적 지위 (Humanitarian status, B급 지위, 임시 체류를 허가하는 예외적 경우)는, 정부에 의해 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일반화된 폭력, 외부침략, 국내소요, 대량의 인권침해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국적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위험한 자에게 적용된다.¹⁾

UNHCR 아래 부류의 난민 역시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협약상 난민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

위임난민(Mandate refugees). 위임난민은, 다행히 협약과 동일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UNHCR 규정에 의하여 고등판무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이들은 “위임난민”으로 부른다. 따라서 위임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비호국이 협약이나 의정서의 당사국인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이들은 협약상 난민인정의 신청이 거부된 자일 수 있다.

위임난민으로 인정된 자는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도록 UNHCR의 보호를 받고, 기본적인 인도적 원칙에 따른 처우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는 협약상 난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광범위한 정의.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한 자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주장할 수 없고, 상기 열거된 이유로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여전히 위험에 놓일 수 있다. 그러한 자는 UNHCR규정의 정의보다 광범위한 의미로 UNHCR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들은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기본적인 인도적 원칙에 따라 처우된다.

이 교육서는 협약상 난민과 위임난민 즉 협약과 UNHCR규정상 정의된 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정된다. 여기서는 광범위한 난민 정의에 의한 결정은 다루지 않는다.

1) 1984년 카타헤나 선언에 포함된 규정 (제3조 3항).

3) “사실상” (prima facie) 난민

집단 이주 “사실상”(혹은 반증이 없는 한) 난민지위의 인정은 - 달리 말해서, 우선 채택된 증거에 의거해 부여하는 난민지위 - 개별적으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명백한 이유로 인하여 실제로 불가능한 집단이주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UNHCR이 특히 아프리카에서 일반적인 대규모의 난민이주가 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된 1960년대 이후부터 일반관행이 되어 왔다.

긴급상황에 관한 UNHCR 편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난민지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보호를 위해 긴급히 대처해야 할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피난처를 구하는 자가 UNHCR의 보호대상인 경우, UNHCR규정은 이들을 위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행동의 목표는 보호 대상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도적 원칙에 따른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다. 요컨대,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 보편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사실상”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과정은 이 교육서의 범위 밖이다. 지위결정은 통상 UNHCR 현지사무소와 제네바 본부 (관련 지역국과 연계된 난민법무국)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4) 난민지위를 결정하는 자는 법률전문가이어야 하는가 ?

법적 전문성 간단히 말하면 그렇지 않다. 최선의 지침은 상식이고, 협약과 의정서에 포함된 정의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다. 다루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인 경우, UNHCR 본부에 사안을 부탁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은 그러한 복잡한 사례 일부를 제시하는 것이다. 객관적 사실이 거의 이용될 수 없는 경우, 사안의 신뢰성은 개인적 판단의 문제이다.

최종 분석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부여 (benefit of the doubt)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임을 늘 명심한다.

난민지위의 기준

협약상 정의기준에 충족되는 자가 바로 난민이다. 난민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전에 이미 난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난민지위의 인정은 선언적인 행위로서 그가 난민이라는 사실을 단지 공언하는 것에 불과하다.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지위가 인정되는 것이다.

난민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1951년 협약 규정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조항 (inclusion clauses). 이를 조항은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기준이다.

난민이 아닌 경우를 정하고 있는 적용정지조항(cessation clauses)과 적용제조항(exclusion clauses). 전자는 난민자격이 정지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후자는 난민인정조항의 적극적인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개인이 난민지위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난민인정조항 (Inclusion Clauses)

1950년 협약 제1조 A(2)에 의하면, “난민”의 용어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적용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의 정의에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
- 박해가 있어야 한다.
-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의 이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 자신의 출신국 밖에 있어야 한다.

1)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Well-founded fear)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의 문구는 난민정의에 핵심이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용어는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를 둘 다 포함하는 것으로, 난민지위 심사시 양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주관적 요소 공포는 난민정의에 의하면 심리상태로서 주관적 상황을 말한다. 일부 경우 기록에 근거한 사실은 신뢰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다른 많은 경우 비호신청인의 인성과 신뢰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즉 신청인의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 개인적 배경 및 가족배경.
- ▶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집단의 구성원 신분.
- ▶ 그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본인의 해석.
- ▶ 개인적 경험.

객관적 요소 신청인의 진술은 배경상황과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신청인의 출신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신청인의 신뢰성과 그 신청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출신국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이 협약상의 난민정의에 언급된 이유로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또는 출신국으로 돌아간다면 동일한 이유로 참을 수 없는 것이 됨을 믿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박해 (Persecution)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는 박해와 연관되어야 한다. 기근이나 자연재해의 공포를 느끼는 자는, 협약상 난민정의에 언급된 이유 중 하나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지 않는 한 난민이 아니다. 박해는 1951년 협약이나 여타 국제조약에서 정의되고 있지 않다. 협약 제33조로부터,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생명이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이 박해가 된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공언된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의 고결성과 고유의 존엄성을 구성하는 기본적 권리를 열거하고 있다. 이 기본적 권리를 앞서 언급한 다섯가지 이유로 침해하는 것은 박해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 권리의 다음과 같다.

- 세계인권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혹은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로부터의 자유
 - 노예신분이나 노예상태로부터의 자유
 - 법 앞에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자의적인 체포,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 사생활, 집과 가족생활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각 사안의 상황에 따라 공정하지 못한 행동이나 위협과 다음 사항은 박해에 해당될 수 있다.

- 저질러진 범죄에 비해 비례에 맞지 않는 과다한 형벌 또는 반복된 형벌.
- 협약상 정의에서 언급되는 이유에 의한 형벌 (예컨대, 불법적인 종교적 명령).
- 모든 생계수단을 박탈할 정도의 심한 경제제재.
- 협약 상 난민정의에 의한 이유 중 하나로 본국을 떠난 경우, 불법출국이나 해외의 불법체류로 인해 가해지는 중한 형벌.

박해는 통상 국가당국의 행동과 관련된다. 그러나 출신국의 정부가 직접적으로 결부되지 않는 상황도 있다. 예컨대, 난민은 죽음의 분대라고 불리우는 폭동이나 행위로 인하여 탈출하였고, 정부는 그러한 행위를 진압할 수 없고, 그렇게 하기를 꺼리거나, 심지어는 이를 행위에 공모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정부가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박해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박해의 개념은 정부나 그 위임기관의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누적적 근거”(cumulative grounds)에 의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음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신청인은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견디어 왔을 것이다. 그러한 처우는 장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출신국의 일반적인 불안정한 분위기와 같은 부정적 요소와 결합되어 박해의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정당한 주장이 될 수 있다.

경제적 이주민 개인으로부터 모든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심각한 경제적 제재는 박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본국을 떠나는 자는, 박해의 공포를 가지지 않으므로 경제적 이주민이지 난민이 아니다.

여권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난민지위를 인정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난민은 때로는 합법적으로 여권을 얻는다. 일부 경우에는 정부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 국가를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하기도 한다. 또한 위조여권을 소지하는 경우도 있다.

3)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협약에 명시된 박해의 5가지 사유가 있다. 흔히 이를 요소는 결합되기 마련이다. 예컨대 종교적 혹은 인종집단의 구성원이 정치적으로도 반대되는 입장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인종 인종은 통상적으로 “인종”(races)이라고 쓰여지는 모든 종류의 인종 집단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참조한다.

종교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를 변경할 자유, 또한 공적 혹은 사적으로, 교육, 신봉, 숭배 및 의식에 있어서 자신의 종교를 표현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종교집단의 구성원신분의 금지.
- ▶ 공적 혹은 사적으로 숭배 금지.
- ▶ 종교교육의 금지.
- ▶ 어떤 종교집단에 대해 종교의 신봉 혹은 구성원신분을 이유로 한 중대한 차별.

국적 협약상 정의에서 “국적”이라는 용어의 해석은 “시민권”에만 한정되지 않고 특정 민족, 종교, 문화 혹은 언어 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특정사회집단은 통상 유사한 배경, 습관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가족은 사회의 연합체 혹은 집단으로서, 특정사회집단이 될 수 있다. 이 항목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를 가진다는 주장은, 다른 이유 즉 인종, 종교 또는 국적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를 가진다는 주장과 대개 중복된다.

1951년 협약은 사회적 요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유일한 국제조약이 아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한 조항이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포함되고 있다.

정치적 의견 협약에 포함된 박해의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공포에 대한 5번째 마지막 이유는 정치적 의견이다.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기초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가지고 이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국경에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기본원칙은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서 다시 규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의견은, 국가, 정부 및 정책기관이 관여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가지고 표현하는 광의로 이해되어야 한다. 단순히 정부의 의견과는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졌다 는 사실만으로는 난민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고, 신청인은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의 공포를 가지는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이는 다음을 전제로 한다.

- ① 신청인의 의견은 정부기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 ② 신청인의 의견이 당국에 알려지거나, 당국이 그러한 의견은 신청인에게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 ③ 신청인 혹은 이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자가 탄압조치를 받았거나 이러한 위협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에 대한 조치가 정권에 반대한 범죄행동에 대한 제재형태를 취하는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의 정치적 의견을 분명히 하고, 또한 그러한 의견이 공포를 갖게하는 박해를 유발했거나 혹은 박해를 이끌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연구 A

소수민족에 속하는 H씨는 어떠한 정치적 의견도 갖지 않은 농부였다. 이 소수민족 중 많은 구성원이 국가를 지배하는 다수민족에 대해 보다 많은 자치권을 얻어 내기를 원했다. 그러기 위해 소수민족의 어떤 사람들은 게릴라활동에 가담했다. 게릴라활동이 있을 때마다, H씨는 자신의 민족적 출신 때문에 다수민족에 속하는 일부 이웃의 위협을 받았다. 그는 양 민족집단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당국에 보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국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권한을 많이 잃은 상태라서 보호를 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H씨는 자신이 속한 민족집단의 과격주의자로부터 그들의 편을 들지 않는다고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긴장이 고조되고 수많은 시민이 죽었다. 같은 마을에 사는 그의 가족 중 3명이 살해되었으나 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H씨는 여권을 얻어, 비행기로 본국을 떠나 제3국에 도착하여 비호를 요청했다.

◆ 이 사안에 대한 담당자로서, 난민지위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쟁점은?

◆ 난민인정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은?

(사례연구 A 분석은 p.14 참조.)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된 자 (Refugees "sur place")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되는 경우는 약간 사정이 다르다. 이들은 자신의 본국에서 발생한 상황(예컨대, "쿠데타")이나 본국 밖에서의 자신의 행동(예컨대, 반정부 정치행동) 때문에 난민이 된 자이다. 여기서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은, 출신국을 떠나기 전에 당국이 자신의 의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신청인은 실제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숨겨야 했고, 어떠한 차별이나 박해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편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기를 거부하고 또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이 출신국으로 돌아간다면 직면하게 되는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	--

개인이 정치적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형벌의 대상의 되는 경우, 기소가 정치적 의견 때문에 행해지는 것인지 또는 정치적 동기로 말미암은 행위 때문에 행해지는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소가 정치적 동기로 인하여 저질러진 가별적 행위 때문에 이루어지고, 예상되는 형벌이 관련국의 일반법에 합치되는 경우, 그러한 기소로 인한 박해를 받을 공포의 이유로는 신청인은 난민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에 대해 기소하는 것이, 정치적 의견을 가졌거나 표현했다는 이유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더 육이 정치범은 박해에 해당될 수 있는 가혹하거나 자의적인 형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정치범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다음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 ▶ 신청인의 인성.
 - ▶ 정치적 의견.
 - ▶ 저질러진 행위의 동기.
 - ▶ 저질러진 행위의 성격.
 - ▶ 기소의 성격과 그 동기.
 - ▶ 기소의 근거가 되는 법의 성격

성 별 (Gender)

성별은 협약에서 명시된 박해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호신청인인 여성이 성별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상황이 있다. 예컨대 이들은 사회관습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로 고통을 받는 일이 있다. 다른 예로 여성에 대한 심각하고 조직적인 차별이 있는 경우도 있다. 유럽의회와 UNHCR 집행위원회(결의 39 XXXVI)는 그러한 경우에도 협약상 난민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여성은 “특정사회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국적국 혹은 이전의 상주국 밖의

개인이 자신의 출신국의 영역관할권 내에 있는 한, 국제적 보호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협약은 박해가 출신국의 국경 내에서만 행해진다고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된 자”(상기 참조)의 경우처럼, 개인이 국가를 떠난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공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한 협약 본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무국적 난민 협약은 국적을 가진 난민과 무국적난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적을 가진 난민에 관한 기준은, 그가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무국적난민을 위한 기준은 그가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당해인의 의지에 관계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컨대, 전쟁, 내전 혹은 여타 심각한 소요상태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적국은 자국민에 대하여 보호를 부여할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보호의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국적국이나 상주국 정부가 신청인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보호의 거부는 신청인의 박해에 대한 공포를 확실히 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고, 실제로 박해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보호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이라는 용어는 국적국이나 종전의 상주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난민과 관련된다. 이 용어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라는 문구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난민이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그러한 의도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과 통상 일치하지 않는다. 국적국의 보호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한 보호를 거부하는 이유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기초하지 않는 한 당해인은 국제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난민이 아니다.

무국적자와 난민은 동일한 현상이 아니다. 모든 무국적자가 난민이 아니고, 또한 모든 난민이 무국적자는 아니다. 때로는 본국을 탈출한 자가 국적을 박탈당하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본국과의 공식적 연관성은 지속된다. 무국적자는 협약상 난민정의에서 제시한 이유 중 하나로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국적자는 난민이 아니다.

다국적

이중국적 또는 다국적의 경우,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어느 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난민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일반국제법의 국적관련성이 이 경우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난민지위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1951년 협약의 난민인정조항(inclusion clauses)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1951년 협약에는 난민지위가 종료되는 경우(적용정지조항, cessation clauses)와 난민지위가 거부되는 경우(적용배제조항, exclusion clauses)가 명시되어 있다.

적용정지조항 (Cessation Clauses)

1951년 협약 제1조 C는 난민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난민지위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고, 또한 새로운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포 때문에 떠난 국가에 다시 돌아와 정착하여 그 국가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적국의 보

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적용정지조항은 난민지위를 종료시키므로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상기 열거된 이유 외의 그 어느 것도 난민지위의 철회를 정당화할 수 없다.

난민지위의 취소 난민지위의 정지와 취소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신청인이 고의로 거짓말하거나 적용배제조항이 적용될 만한 중요한 사실을 숨겨서 난민지위를 얻은 후 이 사실이 밝혀지면 난민지위가 최소되는 것이다.

적용정지조항은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제118항에서 제139항)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적용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비호국정부나 UNHCR 현지사무소는 UNHCR 본부에 사안을 의뢰하기 바란다. 적용정지는 주로 난민이 되게 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행해진다.

사례: 최근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출신 난민들에게 적용정지조항이 적용된 바 있다.

적용배제조항 (Exclusion Clauses)

협약 제1조 D, E와 F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난민지위의 이익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유엔의 보호 또는 원조를 이미 받고 있는 자.

이 조항은 특히 UNRWA(유엔 근동지역소재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관할지역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에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 밖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은, 적용정지조항이나 적용배제조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한, 통상 UNHCR의 권한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 비호국의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국제적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자.

- 다음에 해당된다고 믿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은 자.
-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은 자.

-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이들 요건의 상세한 해석은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제142항에서 제163항)을 참조할 수 있다. 적용배제조항은 대개 복잡하기 때문에 비호국의 정부나 UNHCR 현지사무소는 이 사안을 UNHCR 본부에 의뢰하기 바란다.

실제로 적용배제조항은 통상 비호국 밖에서 저질러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와 관련이 있다. 그러한 경우는 다음 방식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

정치적 범죄 혹은 비정치적 범죄 첫째, 범죄가 정치적인가 비정치적인가? 편람에서 설명하기로는, 양자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우선 범죄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그것이 진정한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 진것인지 아니면 사적 이익 때문에 저질러진 것인지). 범죄자체와 그 목적과 목표간의 관련성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더욱이 범죄의 정치적 요소는 그 범죄의 보통법적 성격과 견주어 봐야 한다. 주장된 목표에 비해 지나치게 잔인한 행위는 통상 정치적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의 정치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가지 요소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신청인의 인성, 그의 정치적 의견, 저질러진 행위의 동기와 성격, 범죄가 정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배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의 중대성 둘째, 범죄가 비정치적인 것임을 가정한다면, 다음 문제는 그것이 중대한 범죄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모든 관련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단순히 신청인이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실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대하게 처벌받는 범죄에 대해 특정국가의 사법제도에서는 이를 매우 가혹하게 처벌할 수도 있다. 즉 적용배제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고받은 처벌내용보다 범죄나 저질러진 행위자체를 고려해야 한다.

비호국 밖에서 셋째, 범죄는 비호국 밖에서 저질러져야 한다. 비호국 내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배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우 중대한 사안에서 협약 제33조 2항의 적용이 가능하다.

균형 문제

넷째, 범죄가 중대하고 비정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신청인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의 성격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포를 가지게 되는 박해의 정도의 상호 비중을 신중히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용배제조항은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예컨대 개인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사형집행을 당하는 것과 같은 심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는 경우, 적용배제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죄는 극히 중대한 것 이어야 한다. 사안의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경감시키는 그 어느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박해를 피해 탈출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죄사실(예컨대 비행기 납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적용배제조항은, 개인이 출신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범죄의 성격이 분명히 판명되어 난민지위 인정시 고려된 여러 사안들을 능가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여느 난민지위 심사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균형을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benefit of the doubt)을 부여해야 한다.

특별 사안

징병기피자나 탈영병도 난민인가? 양쪽 모두 통상 국내법에 의하여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처벌은 반드시 박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박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

- 인종이나 종교를 이유로 한 군대 내에서의 박해.
- 협약 상 정의에 의한 이유 중 하나로 징병기피나 탈영을 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심한 중한 형벌을 받는 경우.
- 군사의무의 이행이 (특히 그러한 군사의무가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것인 경우) 진정한 정치적, 종교적 혹은 도덕적 신념, 또는 진정한 양심상의 이유에 반하는 경우.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신청자의 신앙심이 진실된 것인지, 또 징집에 해당하는 다른 대안이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참고 자료 (이들 문서는 인터넷 <http://www.unhcr.or.kr> 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HCR/IP/4/Eng. Rev. 1, Geneva, 1988. 1.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 Protocol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HCR/IP/10/Eng. 1983.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965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사례 연구 B

본국에서 정부가 가한 경제적 제재로 고통을 받던, 부인 C씨는 더 나은 세상을 찾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여권과 3개월 유효기간의 출국사증을 얻어 자국을 떠나 X국으로 여행하였다. X국에서 그녀는 정치적 문제 때문에 본국을 탈출하여 그곳에서 난민지위를 얻은 옛 친구를 만났다. 그녀의 친구는 자국에 대항하는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었고, 곧이어 C씨도 이 활동에 참가할 것을 설득하였다.

C씨는 자국정부에 항의하는 일부 대중집회에 참가하였다. X국에 머문지 4개월

후, 그녀는 난민지위를 신청하면서 최근 데모사태에서 자신의 얼굴이 카메라에 찍혔고 현지신문 첫 면에 게재되었음을 진술하였다. 이 외에도, 그녀는 국가 밖에서의 그녀의 정치적 활동에 대하여 자국 정부가 알고 있다고 말하고, 또한 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불법체류를 이유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감금될 수 있다고 했다.

◆ 이 사안은 “현지에 체재중에” 난민이 된 자와 관련한 문제이다.

심사시 고려해야 할 점은?

◆ 이 사안에서 다른 쟁점은 무엇인가?

◆ C씨는 난민자격이 있는가?

사례 연구 C

K씨는 이제 막 18세가 되었고, 2년간의 군복무를 피하기 위하여 본국을 탈출하였다. 본국이 현재 전쟁 중이고, 본인이 야당 당원이기 때문에 일선으로 보내질 것을 우려해 K는 군복무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군복무나 전쟁에 대한 특별한 반대신념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이번 전쟁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다. 이번 전쟁은 Z국과 교전을 하는 것이다. Z국의 집권당은 K가 속한 정당과 긴밀한 관련이 있고, 그는 자신의 “형제”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 이 사례는 난민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어떤 쟁점을 야기시키나?

사례 연구 D

집권당에 반대하는 모임의 일원인 R씨는 정권에 반대하는 반란을 선동하는 소책자를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서 비밀리에 돌렸다. 그는 이러한 배부행위로 체포되어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년 후 그는 탈출을 시도했는데, 탈주과정에서 한 교도관에게 심하게 상처를 입혀 이 교도관이 여생을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장기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R씨는 자국을 떠나 S국에 비호를 신청할 수 있었다.

◆ 이 사안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 신청인은 어떠한 사유로 난민지위에서 배제될 수 있는가?

◆ 이 사안을 검토하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역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으로 이송하려는 동안, Y씨의 동료 3명이 약식 사형집행을 당했다. 이때 Y씨는 똑같이 일이 벌어질 것이 두려워 탈주하였다. 그는 출국비자도 없이 자국을 떠나 현재 난민지위를 신청해 놓고 있다.

◆ 이 사안의 쟁점은?

◆ 난민인정 협의위원회에 권고 사항은?

사례 연구 E

군인이었던 Y씨는 자국의 전제정권에 반대했고 같은 뜻을 가진 장교들의 모임에 가담하였다. 이 집단은 정부에 반대하는 일종의 공개데모를 하려고 했다. 국가 내에서 합법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데모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은 공군기를 납치해 이웃국가로 가서, 그곳에서 자국정부의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Y씨가 관제탑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납치할 공군기를 물색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이 모임의 대표자가 공군기에 탑승하여 비행기를 납치하기로 했다. 그는 무장한 상태였으나 어떠한 폭력사태도 야기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공군기 납치는 실패로 끝났다. 어느 누구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공군기는 추락하였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 정부는 그 계획을 알아내고 Y씨와 다른 5명을 체포하였다. 이들은 공군기 납치에 따른 15년 징

◆ 범죄의 어떠한 양상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 난민인정 협의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은?

.....

.....

.....

.....

.....

연습 문제

1.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부여받는 4가지 권리是什么？

.....

.....

.....

.....

.....

2. 강제송환금지원처를 정의하시요.

.....

.....

.....

.....

.....

3. 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의해 난민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실체는? (하나를 고르시오.)

- a. UNHCR
 - b. 조약 당사국
 - c. 국제사법재판소
 - d. 비정부기구

4. 1969년 OAU 협약은 UN의 난민정의를 어느 정도로 확대시키고 있는가

5. 개인은 난민지위를 신청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가?

6. 난민지위를 결정하는 자는 꼭 법률전문가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
.....
.....
.....

7. 난민정의의 4가지 주요 요소를 열거하시요.

8. 난민지위 신청을 심사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신청인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청인의 출신국의 상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9. 경제적 이주민을 난민과 구별하는 방법은?

.....
.....
.....

12. 난민지위가 정지되는 경우는?

.....
.....
.....

10. 개인이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
.....
.....

13. 어떤 자가 난민지위로부터 배제되는가?

.....
.....
.....

11. 무국적자가 난민이 아닌 경우는?

.....
.....
.....

14. 징병기피자 혹은 탈영병이 합법적인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 난민이 될 수 있는가?
-
-
-
-

제2장 난민지위 인정절차



학습목표

- ▶ 공정하고 효과적인 절차수립의 중요성 확인.
- ▶ 효과적 절차의 중요한 특징 확인.
- ▶ 기존 절차의 미비점 발견.

소 개

이 장은 개인이 난민지위의 기준에 충족되는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UNHCR의 보호대상인 난민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정 설명하고 있다.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UNHCR 편람은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절차와 이의 효율적인 기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잘못된 결정은 한 개인의 일생을 앗아갈 수도 있다.”

난민지위 결정자

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인 국가에서, 난민지위 심사는 특별히 마련된 절차에 따라 권한있는 정부기관이 담당한다. 그러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 비호신청인을 관련 국가기관에 회부하여야 한다. 일부 경우 UNHCR은 실제 절차에 참여한다. 이들 조약에 의거해 국가기관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된 자는 통상 UNHCR에 의하여 위임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개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인은 여전히 UNHCR의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

협약이나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거나, 또는 난민지위 인정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UNHCR이 신청인에 대해 난민인지 여부를 UNHCR 규정의 정의에 입각해 결정한다.

일반 원칙

일반 법원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증책임이 있는 반면, 난민의 경우는 좀 특수하다. 비호신청인은, 당해 출신국을 떠날 때 상황과 신청의 성격상, 문서나 다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신청인은 진실만을 말하고 가능한 많은 관련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관련 사실 대부분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은 심사관에 달렸다. 심사관이 독립적인 조사를 한 후에도, 신청인의 진술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신청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을 부여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관련 사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잘못 밝히는 경우가 있다. 신청인의 허위진술은 난민지위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허위진술은 심사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거나, 사안과 관련한 모든 상황이 알려지는 경우 재평가될 수 있다.

정부에 의한 인정

난민지위 인정절차는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들 조약 중 그 어느 것도 국가가 채택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행정 및 사법제도가 국가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된 난민지위 인정절차를 제안할 수 없다.

그러나 UNHCR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모든 난민지위 인정절차는 아래 체크리스트에 나열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대부분 이들 요건은 집행위원회 결의 8(부록 2), 28(부록 4) 및 30(부록 5)과, 비호에 관한 국내절차통일화에 관한 유럽의회 수뇌위원회 권고 R (81) 16 (부록 6)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난민지위 인정절차 체크리스트

UNHCR임무 중 하나는 각 조약 당사국이 공정하고 효과적인 난민지위 인정절차를 채택하도록 모색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다음 체크리스트에 포함된다. 난민지위 인정절차를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정부당국은 다음 목록을 준수하기 바란다.

1. 특별히 마련된 난민지위 인정절차를 통해 모든 난민신청자를 접수하고 심사한다. 심사관은 본안을 알고, 신청인의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2. 난민신청을 일차적으로 평가하는 단일기관 (가능한 한 중앙부처의 특정부서)을 명확히 지정한다.
3. 일차 심사와 이의신청과정에서, 신청인이 가능한 한 직접 결정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도록 허용한다. 면담 보고서나 기록에만 근거하여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인 직접심문은 매우 중요하다. 직

접심문을 통해 난민지위 결정자는 신청인의 태도와 품행을 평가하고, 부수적인 상세한 질문을 할 수 있다.

4. 비호요청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이 당국에 제출한 정보는 비공개이고, 청원을 위한 목적, 즉 난민지위와 비호요청을 심사할 목적으로 당국에 의해서만 이용되어야 함을 늘 명심한다. 신청인은 이 정보를 이용할 권리가 있고, 정보는 개인의 명백한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될수 없다. 신청인의 동의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강압에 의해서는 안된다.
5. 신청인은 그가 만나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 혹은 국경(공항, 항만, 모든 국경 지역이 포함됨으로)공무원에 의하여 난민지위신청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이들 공무원은 관련 국제조약의 범위 내에 속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신청인을 당해 국가에 체재하도록 허용하고 신청인의 사안을 상급기관에 회부하여야 한다.
6. 신청인은 자신의 사안을 관계기관에 제출한 경우, 유능한 통역관을 비롯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UNHCR 대표자와 만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7. 비호신청인이 난민인정절차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명백히 서면, 심사기간동안 신청인이 그 국가에 체류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신청인은 또한 상급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이의신청이 있는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 난민지위를 확인하는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9. 난민지위가 불허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청구를 허용한다. 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불허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청인은 또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을 통지받아야 하고, 이를 신청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재심사가 동일한 기관에서 행해지는 경우, 첫 번째 경우와는 다른 결정자가 사안을 공식적으로 재심사하여야 한다.

10. UNHCR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절차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1.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정절차를 남용하는 신청을 다루는 절차도 최소한 다음 기준에는 부합되도록 한다.

- 사안이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남용적인 것인지 결정하는 기관은 통상 난민지위를 결정하는 기관과 동일하여야 한다.
- 일반 난민지위 요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은 이 기관에 속하는 최대한 유능한 공무원과 충분한 개인면담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 반대결정은 신청인이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영역에서 강제추방되기 전에 재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별 조치

난민여성과 무의탁 청소년 신청의 경우에는 특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난민여성 여성 비호신청인과의 면접은 특별히 교육받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 여성에 대한 박해는 대개 강간과 여타 형태의 성폭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여성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꺼릴 수 있다. 고통을 받은 박해의 형태가 난민지위의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성면접관과 통역관이 있어야 한다. 면접관과 통역관 뿐만 아니라 심판관에게는 난민발생국의 여성의 상황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무의탁 청소년 무의탁 미성년자의 난민요청을 다루는 특별절차가 UNHCR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이는 난민아동에 관한 UNHCR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이 지침은, 특히 아동의 정신적 발달과 성숙 정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난민지위 심사과정에 아동전문가가 필히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은 성인과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공포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아동의 심리, 정서, 신체적 발달과 행동에 정통한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아동은 법적으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돋는 후견인이 임명되어야 한다. 심판관은 객관적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신청자 가족의 상황과 부모가 있었다면 어떤 식의 결과를 원했을지 등도 염두에

두길 바란다. 또한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을 가능한 한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the benefit of the doubt)하도록 한다.

정신장애인

가능하다면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학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 정신병의 성격과 정도.
- 신청자가 사안을 제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사안에 대한 상세한 조사는 전문가의 진단결과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증거를 제출할 입증책임을 적게 부담한다. 심사관은 신청인 자신보다는 다른 정보에 따라 판단하고, 신청인의 주변상황의 객관적 요소에 주안점을 둔다.

일반적으로 많은 신청인들이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면접관과 결정자는 늘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상황에 적절히 적용시켜야 한다.

난민지위 인정에 있어서 UNHCR의 참여

UNHCR은 난민인정에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므로, 난민지위 인정에 있어서 UNHCR의 참여는 특히 중요하다. 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단독 결정자.
- 난민인정협의회에 소속되거나 자문관 혹은 옵저버로 참여.
- 이의신청시 이를 결정하는 난민인정협의회에 소속되거나 자문관 혹은 옵저버로 참여.
- 난민지위인정절차와 관계없이 난민신청이 거절되어 추방당할 위기에 있는 사안을 재심.

각각의 참여방법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가장 적절한 형태는 당해 국가내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UNHCR의 경험으로 보면, 국내인정절차에 대한 UNHCR의 참여는, 항소단계 혹은 필요한 경우 (신청이 처음 제기되는)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유용하다. 그 어느 경우이든 UNHCR은 옵저버 자격으로 모든 개별 사안에 최대한 참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UNHCR 옵저버는 회의에 참석하고 개별사안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UNHCR에 의한 인정

정부의 난민지위 인정절차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사안을 별도 심사하는 것이 UNHCR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이다. 결정은 신청 자체에 대해서 뿐 아니라 UNHCR이 제공하는 지원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직접 관련이 있다. 이는 가족재결합, 자발적 본국귀환, 재정착, 혹은 다양한 형태의 물질적 지원이 될 수 있다. 국내절차와 마찬가지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UNHCR의 절차는 다양하다. 공정하고 적절한 심사를 위하여, 이전 항에서 열거된 주요 요소가 UNHCR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자격있는 직원이 정해진 절차에 의거해 난민 신청을 심사하여야 한다. 결정은 개별적 면담에 기초하고 (UNHCR 난민지위 심사 양식에 기입한 후, 부록 1 참조) 통역관이 있어야 한다.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 난민은 이 사실을 통지받고 적절한 증명서를 부여받아야 한다. 신청이 거부된 자는 거부사유를 통지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의신청은 처음 결정을 내린 직원과는 다른 직원이나 몇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신청인 면담 기법

사안의 사실을 진실되게 명백히 진술하는 것은 신청인의 의무이다. 면담관은 최대한의 관련정보를 얻고, 얻은 내용을 토대로 일차적으로 신뢰성을 평가할 책임이 있다.

UNHCR의 경험에 의하면 몇 가지 면담기법이 도움이 된다. 면담기법은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복잡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본부에 회부하기 위해 정보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신뢰분위기 조성

1. 신청인이 자유로이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는 신뢰 분위기를 조성한다. 신청인에게 모든 진실은 엄격히 비밀에 부쳐진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면접하기 전 신청인과 상담하면서, 진실을 말하고 이야기를 꾸미기 위해 과장된 설명이나 허위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설명해 준다. 진술의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경우 신뢰성의 의혹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해 준다. 그러한 의혹은 정직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피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서면에 의한 설명

2. 신청인에게 자신의 행동을 날짜별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문맹일 경우 면접관이 작성한다. 제출된 서류는 난민지위 심사양식에 별첨한다. 난민지위 심사양식을 토대로 한 면접에서도 언급되지만,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이 자료는 신청인이 조국을 탈출하여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완 설명해준다.

면담 보고서

3. 면담 보고서는 UNHCR의 난민지위 심사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므로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출신국에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은 이유와, 이전의 행동이 박해의 공포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물어본다. 예컨대, X씨가 특정정당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출신국에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고 기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X씨는 그러한 연관성에 대해, 자신의 정확한 활동, 다른 정당구성원의 성명, 이들이 회합하는 횟수, 회합장소의 정확한 주소 등 특별히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또한 X씨가 출신국에서 현지로 오게 된 방법을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그가 합법적으로 떠났는지, 여권과 필요한 경우 출국사증을 얻은 방법과, 불법적으로 떠난 경우 이용한 수단).

신청인에게 신청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언제, 어디서, 왜, 누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의 6하 원칙에 따른 사실을 아는 것이 신뢰성있는 내용과 허위사실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건일시와 장소를 축으로 하는 표를 만들고 모순이 나타나면, 해명을 요구한다.

면접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날짜별로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신청인이 제시한 사건의 설명.
2. 다음 사항을 설명하는 신청인의 신뢰성에 대한 면접관의 독립적 평가.
 - 신청인의 태도와 행동 (정직성, 자발성, 망설임 혹은 신중함).
 - 진술의 신빙성²⁾.

2) 신청인의 태도와 행동과 관련한 문화 상호간 양상은, 면접기법을 위한 별도의 교육서에서 분석됨을 유의한다.

분명히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있을 수 있다.

- 면접관과 신청인 간의 문화적 및 언어적 차이.
- 면접관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신청인의 바램.
- 신청인이 정부 당국을 두려워하거나 출신국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특정사실을 빼뜨림.

참고 자료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1967 Protocol

집행위원회 결의 8, 28 및 30

Executive Committee Conclusions No. 8, 28 and 30

비호에 관한 국내절차통일화에 관한 유럽의회 수뇌위원회 권고 R (81)

Recommendation No. R (81) 16 of the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on the Harmonization of National Procedures Relating to Asylum

UNHCR 난민지위 심사 양식

UNHCR Eligibility Questionnaire

사례 연구 F

Ruritania에서 온 비호신청인 Mrs. X는 Refugania에 있는 UNHCR 사무소에 도착했다. 그녀는 현지대표를 만나기를 요청하였고, 당국이 자신을 체포하여 출신으로 돌려보낼 것을 두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대표가 부재중인 가운데, X씨는 UNHCR에서 근무한지 6개월이 된 보호 담당관과 면담하였다. 그는 그녀를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1시간 후에 면접을 끝냈다. Ruritania 상황에 익숙하지 않는 담당관은 X씨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그녀가 출신국을 떠났던 사유를 UNHCR 본부에 보냈다. “이 보호 요청자는 반체제의 XXX당에 속한다. 그녀는 지도자는 아니며 단순히 소책자를 배포했다. 그는 친구로부터 당국이 그녀가 연루되어 있음을 알아냈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녀는 탈출했다”.

본부는 이 사안에 대해 소책자를 배포한 것만으로는 박해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X씨는 난민이 아니라고 자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신청인은 본부에 편지를 보내, 사안을 재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새로 추가된 증거서류는 없었다. 본부에서 사안이 재심사되었으나 동일한 직원이 심사하였고 새로운 사실이 없으므로 첫 번째 결정을 고수하였다. 그는 이 결정을 X씨에게 알렸다.

◆ 이 사안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절차상 쟁점은?

◆ 이들 각 쟁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
.....
.....

사례 연구 G

아틀란티스 왕국은 1973년에 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다. 가입 직후 난민인정위원회(RDB)와 난민재심위원회(RAB)를 설립하였다. UNHCR은 옵저버와 자문관으로서 모든 RDB 회의에 참가하였다. RDB의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독립적인 재심결정을 내리는 RAB에 회부되었다. RDB는 1년에 3,000건의 사안을 심의한다.

지난 해, 비호신청인의 수는 9,000명에 달했다. 정부는 현재 인정절차를 개정하는 입법을 고려 중에 있다. 중요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으며, 정부는 입법초안에 대한 UNHCR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 1) 모든 신청은 국경이나, 또는 입국한 지 늦어도 48시간 내에 이루어야 한다.
기한을 넘은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 2) 또한, 신청은 다음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a) 신청인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하고, 비호신청인을 출신국으로 돌려 보내지 않는 국가에 이미 있었던 경우.
 - b) 신청이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남용적인 경우.
- 3) 사안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결정은 국경경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자는 즉시 국가 밖으로 추방한다. 이 결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4) 사안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은 출입국 담당 공무원과 면담하고, 출입국 공무원은 면담내용을 요약하여 본인의 의견과 함께 RDB로 보낸다.

5) RDB는 출입국 공무원의 면담기록을 기초로 결정한다. RAB는 없어지고 신청본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법률문제에 대한 항소가 행정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정부는 입법안에 대한 UNHCR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사례연구 분석은 P.53 참조)

◆ 기존의 입법에 대한 의견은?

.....
.....
.....

◆ 개정안을 심사하고, 각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요.

.....
.....
.....

연습 문제

1. 난민지위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
.....
.....
.....

2.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인 국가들이 동일한 난민지위 인정절차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
.....
.....
.....

3. 출입국 담당 공무원이나 국경공무원은 난민지위 인정절차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가?

.....
.....
.....
.....

4. 어떠한 상황에서 난민신청인이 비호국으로부터 강제추방될 수 있는가?

5. 난민지위에 대한 거부결정의 재심이나 이의신청이, 첫 번째 결정을 내린 기관과 같은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6. UNHCR의 난민인정절차와 정부당국의 절차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가?

7. 홀륭한 면접기술의 주요 기법은?

8. 난민지위 심사관은 무의탁 청소년의 난민신청이라는 특별한 사안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사례연구 분석

사례 연구 A

이 사안은 다음 문제를 야기한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박해,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Well founded fear) (편람 제37항에서 제50항)

공포 (Fear)

- 공포는 난민정의의 주관적인 요소이다.
- 공포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면접하고, 신청인의 주변상황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 동일한 “객관적”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이 각기 다르게 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자신의 종교를 신봉할 수 없는 경우는 한 개인에게는 삶이 참을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편람 제40항, 제42항)

이 경우, 공포는 명백히 존재한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Well-founded)

- 공포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공포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요소가 존재하여야 한다.
-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한다. 공포가 실제로 충분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예컨대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큰가를 따져봐야 하는가?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것이 타당한가? 예를 들어보자. 종교적 소수집단의 구성원의 3분의 1이 정부에 의해 살해당했다. 따라서 귀환시 살해당할 가능성은 3분의 1밖에 안되지만, 이 경우 우리 모두는 신청인의 공포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일어날 가능성에 따라 공포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따라서 충분한 근거란 “있을 법한” 혹은 “증대하거나 타당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경우는, 객관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박해 (Persecution) (편람 제51항에서 제53항)

박해

- 박해는 어떠한 국제조약에도 정의되고 있지 않다. 박해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생명권,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근로의 권리, 이주의 자유로 시작하는 일련의 권리와 연장선상에 있는 기본권의 침해이다. (세계인권선언 참조)
- 일부 인권의 침해(예컨대 살해나 고문)는 명백히 박해 행위에 해당된다.
-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인권의 침해 역시 박해에 해당된다. 근로의 권리를 예를 들어 본다. 실직상태는 박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박해가 될 수 있다.
- 차별은 누적적으로 행해진다면 박해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박해의 공포를 가진다.

박해자 (Agents of persecution)

- 박해가 늘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자신의 국민을 보호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박해로 간주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박해자로 볼 수 있다. (편람 제65항)

이 사안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유효한 여권의 소지

- 유효한 여권의 소지는 박해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며, 이를 이유로 난민지위의 인정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편람 제47항에서 제50항 참조)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편람 제66항에서 제68항 참조)

이유 (Reasons)

- 박해는 난민정의에서 규정된 1개 이상의 이유와 관련되어야 한다. (편람 제66항)

이 사안에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인종, 국적 (Race, nationality)

- 이 사안에서는 민족집단에 기인한 것이 분명하다.

특정사회집단 (Particular social group)

- “사회집단”的 개념은 정의되고 있지 않다. 이는 통상 유사한 배경, 습관 혹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로 구성된다.
- 가족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다.

정치적 의견 (Political opinion)

- 신청인이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이유는 여전히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특정상황에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최근 미국의 사례에서 인정된 것처럼, 그것 자체가 정치적 의견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이 사안이 또한 그러한 경우이다.
- 오해로 인해 정치적 의견은 박해를 이끌 수 있다. 예컨대 당해인은 오인되어 반대파로 의심받을 수 있다.

사례 연구 B

부인 C씨는 자신의 국가를 떠날 때는 분명 난민이 아니었다. 그녀의 경우는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1.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된 자 (데모에 참가함으로써).
2. 장기체류나 불법출국에 대한 처벌.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된 (Refugee “sur place”) (편람 제94항에서 제96항)

그녀가 참가한 활동이, 본국 귀환 시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가정하는 경우, 그 일이 국가를 떠난 이후에 발생했고, 혹은 그녀가 귀환 시에 위험에 놓일 수 있는 활동에 참가하기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난민지위의 인정에서 자격을 박탈당하는가 ?

양쪽 모두 아니다.

- 난민정의에는 사건이나 활동이 국가를 떠나기 전에 일어나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난민정의에서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공포를 언급하고 있지, 이 공포가 자국을 떠나기 전에 발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 둘째, 의도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놓이게 했다는 이유로, 난민자격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이 이유를 채택하는 경우, 특정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혹은 반대집단에 가담하는 것은 난민자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그러나, 정치적 신념을 진정으로 갖지 않은 경우, 난민지위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장기체류나 불법출국에 대한 처벌 (Penalties for overstaying or illegal departure) (편람 제61항)

- C씨가 실제로 장기간 체류에 대한 중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 본국을 떠났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는 이유가, 협약상 난민정의의 5가지 이유 중 1개 이상과 관련이 되는 한, 그녀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 사례에서는 이 점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협약상 정의에서 1개 이상의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부 국가기관은, 탈출한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형벌을 적용하는 국가의 동기에 초점을 맞춘다. 일부 기관은 관련법을 정치적인 법으로 고려하고, 신청인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일부는 국가의 처벌행위를 반대파에 대한 정치행위로써 간주한다. “본국을 탈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따라서 난민정의의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례 연구 C

이 사안은 병역기피의 문제이다.

병역기피 (Draft evasion) (편람 제167항에서 제174항)

이 사안은 두가지 서로 상충되는 권리의 문제이다. 국가의 징집권과 개인의 종교적 신념 혹은 개인적 양심의 권리.

- 국가의 권리는 합법적인 것이나, 개인의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 많은 국가는 대안, 비군사적 복무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이 경우, 난민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 사례에서처럼 병역의 대안으로 택할 수 있는 봉사가 없을 경우, 다음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 군복무 중 차별이나 박해가 있는가?
- 인종, 종교, 기타의 이유로 병역기피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처벌이 있는가 ?
- 군복무가 진정한 정치적, 종교적 혹은 도덕적 확신, 또는 정당한 양심상의 이유에 반하는 행동인가 ?
- 군사활동이 국제사회에 의하여 비난을 받았는가 ?

이 사례에 대해서는 이 질문들에 대한 추가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사례 연구 D

이 사안은 다음 2가지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난민지위 인정문제 (inclusion)와 배제조항(exclusion) 적용문제.

난민지위 인정조항 (Inclusion clauses)

- 적용배제요소를 고려하기 전에, 사안을 완전한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인정조항을 고려한다. 신청인이 난민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배제조항의 적용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 사안은 신청인이 난민지위의 자격이 있음이 분명하다.

적용배제조항 (Exclusion clauses) (편람 제140항에서 제163항, 특히 제151항에서 제161항)

- 적용배제조항은 늘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다음 질문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 범죄가 정치적 혹은 비정치적인가 ?
- 중대한 범죄인가 ?
- 그것은 범죄인가 ?

이 사안에서 범죄는 비정치적이고 중대하다.

다음 단계는 저질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의 성격과 공포를 느끼는 박해의 정도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적용배제조항이 적용되려면 범죄의 중대성이 공포를 느끼는 박해보다 더 훨씬 더 커야 한다. 범죄를 평가하면서, 상황을 완화하고 가중시키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서, 범죄는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명심하고, 범죄와 박해의 비중을 평가해 본다면 적용배제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아무런 이유없이 폭력이 행해졌다면 결정이 달라지는가? (편람 제156항, 제158항)

사례 연구 E

이 사안은 난민인정과 적용배제문제를 야기한다.

난민인정 (Inclusion)

-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박해인가 기소인가? (편람 제56항에서 제60항 참조)
- 15년형은 범죄(기소)에 대한 적정한 형벌로 인정될 수 있으나 약식의 사형 집행은 박해로 볼 수 있다. 이 사안에서 형벌은 지나치고, 신청인의 정치적

의견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졌고, 난민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불법출국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례 연구 B에 대한 분석참조).

적용배제 (Exclusion)

- 일반적인 내용은 사례연구 D에 대한 분석참조.

이 경우에 범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적용배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편람 제152항 참조).

- 범죄는 명백히 중대하다. 범죄가 비정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범죄와 박해간의 균형을 평가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한편으로는, 신청인의 성격과 범죄를 둘러싼 모든 관련 요소(배경, 동기, 생명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다는 사실 등)가 조사되어야 한다. 그리고나서 이 모든 요소들과 귀환시 생길 수 있는 결과(이 사안에서는 죽음)와의 비중을 견주어 보아야 한다.
- 귀환 시 발생하는 결과와 행위의 성격을 비교하는 까다로운 작업 끝에 두 가지의 비중이 똑같다는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 사안이 그런 경우라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유리한 해석을 통한 이익부여(benefit of doubt)가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신청인은 난민지위 인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사례 연구 F

부인 X씨의 경우는 다음 문제를 야기한다.

- 담당직원이 난민지위 신청인을 면접하는데 있어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 담당직원의 경험도.
- 통역관의 이용과 선택. (대개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난민이 아니고, 신청인의 출신국의 국민이 아닌 통역관이 있는 것이 바람직함을 명심한다).
- 담당직원의 보고서 내용의 충분성. 이 사안에서, 보고서는 내려질 결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날짜별로 정리된 보다 관련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문제. 단순히 새로운 사실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의신청제도는 잘못된 결정에 수반되는 중대한 결과 때문에 있는 것이다. 부인 X씨의 경우 이의신청이 바람직하다.
- 누가 이의신청을 심사해야 하는가? 이의신청은 첫 번째 결정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재심되어야 한다.

사례 연구 G

우선 기억해 둘 것은 아틀란티스의 기존절차가 적절한 것이고, 모든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기준을 상당히 낮추고, 선의의 비호신청인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법개정을 하기보다는, 당국은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기 바란다. 지나치게 긴 난민인정 심사기간동안 소요되는 비호신청인에 대한 지원 액수에 비하면 직원수를 늘려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1조

시간제한은 배제되어야 한다. 비호국이 없는 난민에 대한 집행위원회 결의 15 (XXX)는 특히 제(i)항에서 “비호신청인이 일정기한 내에 비호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렇게 하지 못하였거나, 다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로 비호신청을 고려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a항

이 조항은 완전하지 않다. 비호신청인은 특정 상황에서만 “제1차 비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관련국가가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당해인의 재입국에 대해 양국간에 사전합의가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난민인정절차를 이용하고, 인도적인 처우를 받아야 하며, 적절한 장기간의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2조 b항

이 조항에 나온 “근거가 없거나 남용적인 경우”인 문구에 대해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난민신청절차를 남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명백한 개념정의가 필수적이다. 집행위원회 결의 30 (XXXIV) (d 항)은,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남용적인” 것은 “명백히 허위하거나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기준 또는 비호부여를 정당화하는 다른 어떤 기준과도 관련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난민지위 신청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본 조항은 삭제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 결의 30은 이 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사안이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남용적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통상 난민지위를 결정하는 권한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항 (ii)). 난민지위 거부결정은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당해 영역 밖으로 추방되기 전에 재심을 받아야 한다. ((e)항 (iii))

제4조

출입국 관리 직원의 역할에 관한 본 조항은, RDB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출입국 관리 직원의 면담기록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만일 위원회가 직접 질문을 하고, 신청인이 믿을만한 설명을 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신뢰성 여부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고, 개인면담을 통하여 최선의 평가를 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 결의 30 ((e)항 (i))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난민지위인정 혹은 비호부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충분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과, 가능하다면 난민지위의 인정권한을 가진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완전한 개인면담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5조

난민이의신청위원회(RAB)의 해체에 대한 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난민지위 인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결의 8 (XXVIII) (e)항 (vi)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청인은 “관계국가의 행정기관이든 사법기관이든 통상적 제도에 따라, 동일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하여, 이 결정의 공식적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명백히 언급하고 있다. 법률문제가 아닌, 사안의 본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난민인정절차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해답

제 1 장

1. 개인이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4가지 주요 이익은 무엇인가?

- 출신국으로 송환되지 않는다.
- 1951년 협약 혹은 1967년 의정서에 규정된 제권리, 또는 이를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일반국제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제권리.
- 보호와 필요한 경우 지원조치를 받을 이익.
- 영구적 해결(자발적 본국귀환, 현지동화, 혹은 제3국의 재정착)을 찾는데 있어서 지원을 받음.

2.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정의하시오.

비호신청인을 출신국으로 혹은 그가 위험에 놓일 국가로 송환하지 않는 것.

3. 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의해 난민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실체는?

b. 이를 조약의 당사국인 국가.

4. 1969년 OAU 협약은 UN의 난민정의를 어느 정도로 확대시키고 있는가?

OAU는 난민정의를 외부침략, 점령,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을 이유로, 그의 출신국을 떠나야만 했던 모든 자에게 확대시키고 있다.

5. 개인은 난민지위를 신청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가?

- 1) 정부에 직접 요청.
- 2) UNHCR에 직접요청.
- 3) 유엔개발계획(UNDP)를 통해.
- 4)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6. 난민지위를 결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아니다. 복잡한 문제일 경우에는 법률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다.

7. 난민정의의 4가지 주요 요소를 열거하시오.

- 1)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 2) 박해.
- 3)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함.
- 4)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함.

8. 난민지위 신청을 평가하는 자가 신청인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청인의 출신국 상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신청의 전후상황을 아는 것은 신청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이다.

9. 경제적 이주민을 난민과 구별하는 방법은?

단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국을 떠나고, 난민정의의 이유에 근거한 박해의 공포에 기인하지 않는 자는, 난민이 아니고 경제적 이주민이다.

10. 개인이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되는 자는, 본국을 떠날 때에는 난민이 아니었으나 본국의 변화나 그 국가 밖에 있는 동안에 행한 행위로 인하여 난민이 되는 자이다.

11. 무국적자가 난민이 아닌 경우는?

무국적자가 난민정의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본국 밖에 있는 경우.

12. 난민지위가 정지되는 경우는?

-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새로운 국적국에서 영구적으로 재정착한 경우.
- 자발적으로 본국에 귀환한 경우.
- 난민으로 인정되게 된 관련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주: 과거 중대한 박해로 고통을 받는 경우, 마지막 규칙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13. 어떠한 자가 난민지위로부터 배제되는가?

- 유엔의 보호 또는 원조를 이미 받고 있는 자.
- 비호국 내에서 자국민이 누리는 권리를 가지는 자.
- 일정한 범주의 비정치적 범죄자.

14. 징병기피자 혹은 탈영병이 합법적인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 난민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

제 2 장

1. 난민지위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

증거가 있을 수 없고, 신청인의 설명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유리한 해석을 통한 이익을 부여한다.

2.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인 국가들이 동일한 난민지위 인정절차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행정 및 사법제도가 국가마다 상이하며, 획일적인 제도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3. 출입국 담당 공무원이나 국경공무원은 난민지위 인정절차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가?

자신의 관할권 내에 속하는 사안을 다루는 법을 다루는 명확한 교육.

4. 어떠한 상황에서 난민신청인이 비호국으로부터 강제추방될 수 있는가?

난민지위 신청이 거부되고,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5. 난민지위에 대한 반대결정의 재심이나 이의신청이, 첫 번째 결정을 내린 기관과 같은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다른 결정자어야 한다.

6. UNHCR의 난민인정절차와 정부당국의 절차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지침은 필수적으로 동일하다.

7. 훌륭한 면접기술의 주요 기법은?

- 신뢰분위기의 조성.
- 신청인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권고한다.
- 면접기록에 많은 내용을 자세히 수록한다.

8. 난민지위 심사관은 무의탁 청소년의 난민신청이라는 특별한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 아동의 성숙도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 심사과정에서 아동을 위한 대리인을 선임하고, 가능한 한 부모의 희망사항을 고려한다.
-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부여를 자유로이 적용한다.

용어

◆ 주 : 다음은 이 책에서 사용된 용어들이다. 이를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본 주제를 학습하는데 중요하다.

• 지원 (Assistance)

식량, 피난처, 보건, 또는 여행증명서의 발급, 취업, 공공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경제적 및 사회적 업무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원조.

• 적용정지조항 (Cessation clauses)

난민으로 인정된 후 난민의 지위가 정지되는 - 즉 국제적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 요건을 정한 1951년 협약상 조항. 예컨대 자발적으로 본국에 돌아가거나, 혹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자.

• 협약상 난민 (Convention refugee)

1951년 협약 혹은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인 국가에 의하여 난민지위가 인정된 자.

• 적용배제조항 (Exclusion clauses)

난민으로 인정된자가 난민지위로부터 배제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 1951년 협약상 조항. 예컨대 이미 유엔의 보호 또는 원조를 이미 받고 있는 자,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자, 국제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자.

• 인도적 지위 (Humanitarian status)

일반화된 폭력, 외부침략, 국내분쟁, 인권의 침해, 또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을 이유로, 자신의 출신국으로 돌아가면 위험에 놓일 수 있는 경우, 강제송환금지의 권리를 부여받는 난민. 그러나 인도적 지위로 인정된 난민은 협약상 난민과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받을 권한은 없다.

• 난민인정조항 (Inclusion clauses)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는 1951년 협약상 조항.

• 위임난민 (Mandate refugee)

비호국이 1951년 협약 또는 1967년 협약의 당사국인지에 관계없이, 난민고등

관무관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되는 자. 위임난민은 기본적인 인권을 부여받고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한이 있으나, 협약상 난민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지는 못한다.

-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 박해 (Persecution)

박해에 대한 명백한 정의는 없으나,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혹은 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을 이유로 한, 생명이나 자유에 대한 위협,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는 박해를 구성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 사실상 난민 - 반증이 없는한 난민 (Prima facie refugee - Refugee in absence of evidence to the contrary)

집단내 모든 개인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의해 집단전체가 영향을 받을 경우 난민지위의 “집단적 인정”이 인정된다. 사실상 난민지위는 개별사안을 심사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 보호 (Protection)

법적 시민적 권리의 인정.

- 강제송환 (Refoulement)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혹은 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을 이유로,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위험한 지역으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것.

- 난민 (Refugee)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 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이 정의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된 자 (Refugee “sur place”)

출신국을 떠날 때는 난민이 아니었으나, 그가 출신국을 떠나 있는 동안 그 국가에서 발생한 상황 때문에 이후에 난민이 된 자.

-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ian Refugees in the Near East)

유엔 근동지역소재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신청인의 심리상태와 객관적인 주변상황에 대한 신청인의 주관적인 반응에 근거한 공포. 예컨대 당해인은 출신국의 상황(객관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안전(주관적인 반응)에 대한 공포를 느낄 수 있다.

< 부 록 1 >

UNHCR 난민지위 심사 양식

(면접관이 작성)

비 호 국 (code)
(사진) 사 안 번 호
일 련 번 호
등 록 일

신 청 인 / 가 족

성 명

결 정 기 록

결 정	결 정
서 명	서 명
일 시	일 시
결 정	결 정
서 명	서 명
일 시	일 시

1. 정부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일시: 기관: 명부 번호: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난민신청을 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 신청을 한 경우:

일시: 기관: 명부 번호:

9. 본국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본국을 떠나게 했던, 특별한 사건과 개인적인 경험, 혹은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구성원에게 가해진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여타 문서나 증거가 있으면 첨부해 주시요. 많은 설명이 필요하면 별도의 용지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10. 당신이나 당신 가족 중 본국에서 현재 속해 있거나 이전에 속해 있었던 정치, 종교, 군사, 민족, 혹은 사회 단체를 적으시요:

.....
.....

11. 위에 언급된 단체에서 당신(혹은 당신 가족의 구성원)의 활동과 책임을 설명하시오:

.....

.....

12. 신체적 폭력이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연루된 적이 있는 경우, 사건의 성격과 당신이 연루된 상황을 설명하시오.

.....
.....
.....

13. 체포되거나 구금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그러한 적이 있었다면, 이유, 일시 및 장소를 말하시요:

- 유죄선고를 받는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그런한 경우가 있는 경우..

술간기각:

순간장소: [www.koreanair.com](#)

변조의 성과 협기:

기타 국체정의 사항:

11. **What is the name of the person you are writing to?**
.....

15. 본국에서 군복무가 의무입니까?

의무병일 경우, 징병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복무 기간:

징병됐지만,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이유를 말하시오:

16.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예 () 아니오 ()

(a)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말하시오:

(b) 본국 정부가 당신이 귀환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까?

예 () 아니오 ()

(c) 당신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신체적 안전에 대한 특별한 위험에 직면합니까?

예 () 아니오 ()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이유를 말하시오:

17. 면 접 관: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

.....

.....

.....

.....

.....

.....

.....

.....

.....

.....

.....

면 접 관 서명 일 시

나는 여기 진술된 내용이 본인이 아는 한 최선을 다해 진실되고 완전하며 틀림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신 청 인 서명 일 시

< 부 록 2 >

(1977년 집행위원회 제28차 회기)

No. 8 (XXVIII) 난민지위의 인정¹⁾

집행위원회는,

- (a) 난민지위의 인정절차의 중요성에 관한 고등판무관의 보고에 유의한다.
- (b)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일부 당사국이 이를 조약에 의하여 난민지위의 공식 인정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 유의한다.
- (c) 그러나 많은 당사국 정부가 난민지위의 인정절차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에 유의한다.
- (d)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 중, 아직 절차를 설정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가까운 장래 그러한 절차를 마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그러한 절차에 적절한 형태로 UNHCR이 참가하는 것에 대한 호의적인 고려를 해 줄 것을 희망한다.
- (e) 난민지위의 인정절차는 다음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권고한다.
 - (i) 국경 또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신청인이 난민지위 인정신청을 받게 되는 권한 있는 공무원(예컨대, 이민국 직원 또는 국경경찰관)은, 관련 국제조약(법문서)의 범위 내에 속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루기 위한 명확한 교육을 받고 있어야 한다. 그는 강제 송환금지원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안은 상급기관에 회부되어야 한다.
 - (ii) 신청인은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 (iii) 난민지위의 신청을 일차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지는 명확한 지정기관 - 가능한 한 단일의 중앙기관 - 이 있어야 한다.
 - (iv) 신청인은, 관계기관에 자신의 사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유능한 통역관의 조력을 받을 것을 포함한 필요한 편의를 부여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UNHCR의 대표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그러한 접촉의 기회가 있음을 적절히 통지받아야 한다.
 - (v) 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사실이 그에게 통고되고, 난민지위를 증명하

1)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전체 소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고등판무관 행동계획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결의.

는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vi) 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관계국가의 행정기관이든 사법기관이든 통상적 제도에 따라, 동일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하여, 이 결정의 공식적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vii) 신청인은, 상기 (iii)에 언급된 관할기관에 의하여 그의 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님이 입증되는 한, 심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상급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

(f) UNHCR은,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의 의견을 적절히 고려한 후, 이들 조약의 일방 당사국이 인정한 난민지위를 타방당사국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대표국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다음 회기에 집행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록, 난민지위인정의 역외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를 할 것을 요청한다.

(g) UNHCR은, 당사국 정부를 위한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을 발행할 것과, 개별적인 비호요청의 기밀성과 특별한 관련상황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난민지위의 인정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을 회람시킬 것을 요청한다.

< 부 록 3 >

(1979년 집행위원회 제30차 회기)

No. 15 (XXX) 비호국이 없는 난민²⁾

집행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해 다음 고려사항을 권고한다.

일반 원칙

(a) 당사국은 선의의 비호신청인에게 비호를 인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b) 난민이 박해의 공포의 자유가 있는 국가로 송환되거나 그곳으로 보내는 행위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의 중대한 위반이 된다.

(c) 자국 근해에서 위험에 처한 선박에 대해 피난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상에서 비호를 구하는 자에게 비호를 부여하거나 혹은 적어도 일시적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모든 연안국의 인도적 의무이다.

(d) 비호의 부여와 관련한 당사국의 결정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국적 혹은 국적국의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e) 가족결합에 관심을 가지고 인도적 이유를 고려하면서, 당사국은, 일시적 비호나 영구적 비호가 인정된 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 혹은 의존적인 자녀의 자국 내 입국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호신청인의 대규모 유입의 경우

(f) 대규모의 유입의 경우, 비호를 구하는 자는 적어도 일시적 피난처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리적인 상황이나 그 밖의 다른 상황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난민유입사태에 직면한 당사국은, 필요하다면 관련당사국의 요청으로 공평부담원칙에 따라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g) 다른 당사국은 제1차 비호국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합동으로 혹은 UNHCR 혹은 다른 국제기구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전체 소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고등판무관 행동계획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결의.

개별적인 비호신청인의 경우

(h) 공통기준을 채택하여 비호요청심사에 책임이 있는 국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다음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i) 그 기준에 의하여, 비호요청심사에 책임이 있는 국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비호신청인은 그 국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ii) 기준은 비호신청심사의 책임이 있는 체약국 간의 가능한 의견불일치를 피할 수 있는 성격이어야 하고, 다른 국가에서의 비호신청인의 체류기간과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iii) 비호를 요청하기를 원하는 국가와 관련해서는 비호신청인의 의사가 가능한 한 고려되어야 한다.

(iv) 다른 당사국에서 비호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호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비호를 요청하기 전에, 당해인이 이미 다른 당사국과 관련이 있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이것이 공평하고 타당하면, 당해인은 그 당사국으로부터 제1차적 비호를 요청받을 수 있다.

(v) 어떠한 해결책도 찾을 수 없는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기준의 마련은 관련당사국 정부간에 정기적으로 협의되고, 적절한 경우 UNHCR과 협의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vi) 다른 당사국에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자국 영토 내 들어온 자를 송환하려는 당사국간의 합의는, 비호신청인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i) 비호신청인이 일정기한 내에 비호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렇게 하지 못하였거나, 다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로 비호신청을 고려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j) 제28차 회기(A/AC.96/549, 제53항 (6), (E) (i))에서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에 따라, 비호신청인이 국경 출입국관리국에 일차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경우, 당해 기관은 중앙기관에 당해사안을 회부하는 것에 관계없이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k) 이미 한 국가에서 비호를 인정받은 난민이, 박해의 공포 때문에 현재 비호국을 떠나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그의 신체안전이나 자유가 위협을 받는다는 근거로, 다른 국가에 비호를 요청하는 경우, 제2차 비호국은 그의 비호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l) 국가는, 고등판무관실의 요청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도 비호를 구할 수 없는 일부 난민을 받아 들이는데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m) 당사국은 난민이 그가 박해의 공포사유가 있는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비호국에서 거주할 권리 혹은 비호국으로의 귀환권을 상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n) 1951년 협약 부속서 제6항과 제11항의 목적에 따라, 당사국은, 난민이 다른 당사국의 영역 내에 합법적인 거주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계속해서 연장시키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1951년 협약에서 규정된 것 외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난민과 관련해서도 가능한 한 이와 유사한 관행이 적용되어야 한다.

< 부 록 4 >

(1982년 집행위원회 제33차 회기)

No. 28 (XXXIII) 국내 난민인정절차에서, 특히 UNHCR의 역할과 관련한, 난민지위 인정에 대한 국제적 보호 전체 소위원회의 초기 결의에 대한 추가 권고³⁾

집행위원회는,

- (a) 난민지위 인정에 관한 전전상황에 대한 고등판무관의 보고서를 고려한다.
- (b) 집행위원회 제28차 회기 이후, 난민지위 인정절차는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주요 당사국들에 의하여 마련되고, 이를 절차는 제28차 회기 집행위원회가 권고한 기본요건에 부합되고 있는 것에 만족을 표명한다.
- (c) 난민지위 인정절차 설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아직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에 대하여 가까운 장래 인정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d)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남용적인 난민지위 신청문제해결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신청이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남용적이라는 결정은, 난민지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하여 혹은 이에 회부되어서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신청이 허위이거나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에 규정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기준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절차적 안전장치의 마련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남용적인 난민지위 신청문제는, 독립의 제로서 UNHCR의 연구를 기초로, 다음 회기 소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e) 많은 국가에서 난민지위 인정절차에 UNHCR이 다양한 형태로 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이러한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UNHCR의 가치를 인정한다.

3)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전체 소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고등판무관 행동계획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결의.

< 부 록 5 >

(1983년 집행위원회 제34차 회기)

No. 30 (XXXIV)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남용적인 난민지위 신청 혹은 비호신청⁴⁾

집행위원회는,

- (a) 제28차 회기에서 채택된 난민지위의 인정에 관한 결의 8 (XXVIII)과, 제30차 회기에서 채택된 비호국이 없는 난민에 관한 결의 15 (XXX)를 상기한다.
- (b)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남용적인 난민지위신청문제에 관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 제33 차 회기에서 채택된 결의 28 (XXXIII)을 상기한다.
- (c) 관련기준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되는 타당한 근거를 갖지 않는 자의 난민지위신청은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당사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러한 신청은 관련국에 부담이 되고 난민인정을 요청하는 타당한 근거를 가진 선의의 신청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 (d) 난민지위인정에 관한 국내절차는 모든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신청을 신속한 방법으로 다루는 특별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신청은 “분명히 남용적”이거나 “명백히 근거가 없는”것이고 명백히 허위이거나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기준 또는 비호부여를 정당화하는 다른 기준과도 관련이 없다.
- (e) 난민지위의 신청이 명백히 근거가 없고 혹은 남용적이라는 결정의 실제 성격, 신청에 대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중대한 결과, 그러한 결정은 적절한 절차상 보장을 받아야 함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i) 난민지위인정 혹은 비호부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충분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과, 가능하다면 난민지위의 인정권한을 가진 기관의 소속공무원과 완전한 개인 면담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ii) 명백히 근거가 없고 혹은 남용적인 성격의 신청은 통상 난민지위 인정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4)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전체 소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고등판무관 행동계획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결의.

(iii)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신청인은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당해영역에서 강제로 추방되기 전에 거부결정을 재심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재심조치가 없는 경우,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재심절차는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남용적인 것으로 인정된 신청의 경우보다 훨씬 간단할 수 있다.

(f)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남용적인 신청을 다루는 조치가 다수의 난민자위신청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반면, 두가지 문제는 난민자위의 인정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i) 임무를 신속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난민자위 인정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과 자원의 배치.

(ii) 항소절차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기한을 줄일 수 있는 조치의 도입.

< 부 록 6 >

비호에 관한 국내절차 통일에 대한 회원국 수뇌위원회

권고 No. R (81) 16

(1981년 11월 5일 수뇌위원회, 제339차 수뇌부 회의에서 채택)

유럽의회 규정 제15조 b에 의거하여, 수뇌위원회는,

유럽의회의 목표는 회원국간의 보다 많은 통일을 달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1951년 7월 28일 난민자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1월 31일 난민자위에 관한 의정서를 고려한다.

비호신청인에 관한 유럽의회의 회원국들의 관대하고 인도적인 태도와, 박해의 위험에 있는자의 비호에 관한 결의 (67) 14와 1977년 영토적 비호에 관한 선언에 근거하고 있는, 특히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대한 회원국의 공약을 상기한다.

난민자격 인정관행의 통일에 대한 협의회 권고 787 (1976)을 고려한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업무계획 집행위원회가 정한 이 주제에 대한 기본요건을 명심한다.

또한 결의 (77) 31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에 대한 일반원칙을 고려한다.

비호신청심사에 관한 국내절차가 신청인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하고, 이 목적을 위한 공통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원국 정부에게 법과 행정관행에 있어서 다음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1. 모든 비호신청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2. 비호신청에 대한 결정은 중앙기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3. 비호신청사안을 다루는 명확한 교육이, 중앙기관에까지 진행할 목적으로, 국방경비에 책임이 있는 기관과, 비호신청을 다루는 지방기관에 대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교육은 특히,

i) 특히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할 의무에 대해 상기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ii) 이들 기관에 대하여,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기관에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iii) 비호신청인이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과, 난민신청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4. 제2항에 언급된 중앙기관이 비호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신청인은 당해국가 영역 내에서의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권한있는 중앙기관이, 당해신청이, 비호와는 관련이 없는 사유에 명백히 근거한 것이고, 특히 신청이 허위이거나, 1951년 제네바 협약 제1조 A (2)에 규정된 난민지위 인정기준이나 비호의 부여를 정당화하는 여타 기준에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5. 비호신청의 결정에 반대하는 상급행정기관이나 재판소에 대한 이의신청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효과적으로 결정을 재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이의신청이나 재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중앙기관에 의한 제1차 심사에서 사실이 알려진 경우, 당해신청이, 비호와는 관련 없는 사유에 명백히 근거한 것이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의신청이나 재심절차에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러하다.

6. 신청인은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그는 관련기관에 자신의 사안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부여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역관의 조력을 받으면서 심문기회를 가질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절차의 적절한 과정에서 변호사의 개입, 이의신청절차의 기회, UNHCR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난민을 위해 활동하는 자발적 기관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7. 비호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결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한 경우,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와, 그 결정은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받을 수 있음을,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받아야 한다.

8. 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 난민지위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9. 비호신청, 신청인이 행한 진술 및 그의 기록은 비공개의 성격이 보호되어야 한다.

10. 국가는 비호신청문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UNHCR과 협력한다.